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5. 9. 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1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5. 9. 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강동행과

가. 제출경위

1)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건강동행과)

2) 제 출 일 : 2025. 8. 14.

3) 회 부 일 : 2025. 8. 18.

나. 제출이유

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인 ‘택시 승차대’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출됨.

다. 주요내용

1) 금연구역 지정 범위 추가 : 택시 승차대(안 제6조제1항제3호)

2) 용어 정비 : 버스정류장→버스정류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
- 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5. 7. 10. ~ 2025. 7. 30. 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(2025. 1. 9.)¹⁾에 따라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가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됐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·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개정 조문

- 안 제6조제1항(금연구역 지정 범위)
 -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.
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.

1) 권익위 “택시승차대 ‘금연구역’ 지정해야”... 243 지자체에 권고(아시아 투데이, 2025.1.9.)

- ‘10미터 이내’ 범위는 유사 장소인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시 적용한 범위를 준용하였음.
- 용어 정비에 있어서 ‘버스정류장’을 ‘버스정류소’로 수정한 것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근거하여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또한, 택시 승차대는 다수인이 모이는 교통 관련 시설로서 흡연 노출 위험이 높은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임.
- 다만, 단속·계도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안내표지 설치 및 지도·단속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, 택시 승차대의 구조적 특성상 개방된 곳이 많으므로 범위 지정의 구체적 기준(승차대 중심, 테두리 반경 등)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,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인식 개선 및 계도 중심의 단계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표 1.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현황>

구분	택시 승차대	범위 (10미터)	개수	자치구명
1	X	X	8	강서, 광진, 도봉, 성동, 용산, 은평, 종로, 중랑
2	O	X	7	서울시, 강남, 서대문, 서초, 성북, 송파, 양천
3	O	O	10	강동, 강북, 관악, 구로, 금천, 노원, 동대문, 동작, 영등포, 중구

[관 계 법 령]

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